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6. 2. 27. ~ 3.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 밖의 공급자	43.35%

비고: 제4호의 공급자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